

## 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형자격기준의 설정 및 심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10.01.>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1.10.01.>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입학홍보과장으로 한다.<개정 2021.10.01.>
- 제3조(임기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2. 입학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(전형유형, 지원자격, 전형요소 및 반영방법, 사정방법, 전형일정 등)에 관한 사항
  3. 기타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소위원회)**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수당)**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지원한다.<개정 2021.10.01.>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21.10.01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